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53 발의연월일: 2025. 3. 12.

발 의 자:김영호·박선원·임호선

이재정 · 김동아 · 김준혁

김영환 • 이훈기 • 이병진

문정복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절차에서 법원의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도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거나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이나 현행법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협조한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의 내용이 없어 일반 국민이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무적으로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내용을 수사기관마다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원과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과 감정인 · 통역인

또는 번역인 등이 여비, 일당과 숙박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법에 명기함으로써 비용 지급에 관한 내용을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형사사법절차 협력을 독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법원 및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에서 증인·참고인·감정인
 ·통역인·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함(안 제1조).
- 나. 법원에 출석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함 (안 제9조).
- 다.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비용은 재판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기까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이 있기까지 청구하지 아니하면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12조).
- 라. 검사의 요구로 출석한 참고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 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5조).
- 마. 검사가 지정한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의 기준 및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사장이 정함(안 제17조).

- 바.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한 등의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18조).
- 사.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청구하는 소송비용은 참고인이 진술을 종료한 날,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이 감정서를 제출한 날 또는 문서의 통역·번역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 야 함(안 제19조).
- 아. 사법경찰관의 요구로 출석한 참고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 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1조).
- 자.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은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한 등의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23조).
- 차.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은 참고인이 진술을 종료한 때와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이 감정서를 제출한 때 또는 문서의 통역·번역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24조).

법률 제 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 및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에서 증인·참고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증인·참고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 2.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
 - 3. 국선변호인 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 제3조(일당)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와 이를 위한 여행(이하 "출석등" 이라 한다)에 필요한 일수(日數)에 따라 지급한다.
- 제4조(여비)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네 종류로 구분한다.
- 제5조(숙박료) 숙박료는 출석등에 필요한 밤[夜]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 제6조(여비 등의 계산) 일당, 여비(항공운임은 제외한다) 및 숙박료를 계산할 때 여행 일수는 흔히 이용하는 가장 경제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는 경우의 예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와 같은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 경로와 방법으로 계산한다.
- 제7조(일당 등의 지급 요건)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 및 수사기 관이 정한 기일·장소에 출석하거나 조사받은 경우에만 지급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 법원 및 수사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을 자에게 비용 명세서나 그 밖의 자료 제출 등 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법원

제9조(법원에 출석한 증인 등의 소송비용) ① 법원에 출석한 증인·감

- 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 ② 운임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지급한다.
- ③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국내와 국외(공해를 포함한다) 사이를 여행하는 경우에 그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내를 여행하는 경우의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 제10조(법원의 감정료 등) 법원이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11조(국선변호인의 일당 등) ①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선변호인이 기일에 출석하거나 조사 또는 처분에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 ②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 ③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 제12조(법원에 대한 소송비용의 청구기한)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청구하지 아니하면 지급하

- 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재판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재판이 있기까지
- 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이 있기까지
- 제13조(법관이 정하는 경우) ① 수명법관(受命法官) 또는 수탁판사(受 託判事)가 증인신문(證人訊問)이나 그 밖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이 정할 사항은 해당 법관이 정한다. 다만, 해당 법관이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②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외의 법관이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15조(검사의 요구로 출석한 참고인 등의 소송비용) 검사의 요구로 출석한 참고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 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검사가 위촉한 감정인에 대한 감정료 등) 검사가 위촉한 감정

- 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검찰총장, 각급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정한다.
- 제17조(전문수사자문위원의 수당) 검사가 지정한 전문수사자문위원에 게 지급할 수당의 기준 및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사장이 정한다.
- 제18조(참고인 등과 전문수사자문위원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청 및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는 참고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전문수사자문위 원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 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한 경우
 - 3.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전문수사자문위원이 허위의 설명이나 의견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설명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 5.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 제19조(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소송비용의 청구기한)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청구하는 소송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날
-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 감정서를 제출한 날 또는 문서의 통역 •번역을 완료한 날
- 제20조(위임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 제21조(사법경찰관의 요구로 출석한 참고인 등의 소송비용) 사법경찰관의 요구로 출석한 참고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사법경찰관이 위촉한 감정인에 대한 감정료 등) 사법경찰관이 위촉한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감정료·통역료· 번역료, 그 밖의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제23조(참고인 등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은 참고인·감정인 ·통역인·번역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 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한 경우
- 3.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4조(소송비용의 지급시기)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지체 없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 감정서를 제출한 때 또는 문서의 통역 ·번역을 완료한 때
- 제25조(위임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